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기 상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 법령 정비과제를 이행함으로써 법규의 정합성을 높이고 가중처분의 기준에 대한 문언을 구체화·명확화하여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(안 제2조제3항 신설)

- 다른 법령의 개정내용이나 법정계획 반영, 명백한 오류 수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입법 공백 해소
나. 기상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(안 제18조제2항)

-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 향상

다. 기상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화(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, 안 별표 3 제1호나목 신설)

- 행정제재 시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“처분을 받은 날”, “위반행위

를 하여 적발된 날”로 명확하게 규정

-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적차수 적용 제외기간 신설
-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상산업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0. ~ 0. 00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2.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
3. 단순한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

제18조제2항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하여 고시한다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다목(종전의 나목)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다만, 과태료를 체

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고, 과태료를”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행해진 과태료 감경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</u> <u>2.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</u> <u>3. 단순한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</u>
제18조(자료 제출) ① (생략)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<u>정한다</u> .	제18조(자료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정하여 고시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7446